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14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전용기·장철민·이소영

권칠승·전진숙·허 영

윤종군 • 진선미 • 송옥주

박홍근 • 안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반복적인 통신 장애, 부당 요금 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자유로운 해지가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 에는 귀책사유의 유형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 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명칭에 제한없이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여 통신시 장 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 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2조의20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20(사업자 귀책사유의 범위 및 이용자의 권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분실, 변조 또는 오용
 - 2. 전기통신서비스의 중대한 장애 또는 반복적 장애로 이용자의 서 비스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이용자의 동의 없이 요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약관 또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이용자 피해사유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등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을 해지하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위약 금 또는 할인반환금 등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청구할 수 없다.